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8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 경, 김규남, 김기덕,
김형재, 민병주,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인, 유정희, 이용균,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여가와 삶의 전환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이야기함. 여행의 흐름에 있어 여행객의 취향 또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올해 관광트렌드를 발표하는 등 변화무쌍한 여행객의 관광 수요를 파악해 니즈에 부합한 관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에 대한 연차보고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새로운 관광 변화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정책을 매년 의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기에 우리나라 관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관광의 시책과 동향에 대해서도 의회가 정례적인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가. 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u>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 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 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안 제6조의2(연차보고)에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발생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시의회 상임위 보고의 경우 통상적인 시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회의진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